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38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
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인용법령 명칭이 잘못 인용된 것을 수정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법령명 오기를 정정함(안 제6조)
 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 →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
○ 위원회 약칭 위치 변경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9조)

○ 법률 조항의 띄어쓰기(안 제7조, 안 제12조)

- 제6조 제4항 → 제6조제4항

- 제11조 제1항 → 제11조제1항

○ 인용조문 오기 정정(안 제27조, 안 제29조)

- 제25조 → 제23조

- 제1항 → 제2항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○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명확한 표기와 알기 쉬운 문장 구성을 통해 법령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, 안 제6조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고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약칭 위치를 변경하였음.

○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 조항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, 오인용 된 조문의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“범용(유니버설)디자인(이하 “범용디자인”이라 한다)””를
““범용(유니버설)디자인”(이하 “범용디자인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”를 “「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
3항 중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
공공디자인위원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시”를 “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”
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공공디자인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
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선출”을 “호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
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
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제4호 중 “제11조 제1항”을 “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선출”을 “호선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에 따른”을 “제2항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영 제11조”를 “시행령 제11조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시범사업대상”을 “시범사업 대상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제25조”를 “제23조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2조 제13호”를 “제2조제13호”로 하고, 제7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」 제8조”를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9조”로,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」 제14조 내지 제21조”를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”로

한다.

②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
진흥 조례」로,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
회”로 하고, 제11조 중 “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”
로 한다.

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~ ⑤ (생략)

제7조(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) ① 도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시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

-----.

제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 ① ----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 -----

-----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) ① -----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시 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(생략)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(신설)

-----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-----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

-----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호선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
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
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
있다. 다만, 제6호의 경우에는
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
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
우

5. ~ 6. (생략)

제15조(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
~ ② (생략)
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
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
다.

④ ~ ⑤ (생략)

제16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 ① 다
음 각 호의 기관은 별표 1에 따
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
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
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
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
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
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

제12조(위원의 해촉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 제11조제1항 -----

5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
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호선-----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 ① --

----- 별지
제1호서식-----

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제21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(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영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·시상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제26조(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) ① ~ ② (생략)

③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·군 또는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수당) -----

----. <단서 삭제>

제24조(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) ① -----
같은 법 시행령 제11조-----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범사업 대상-----

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7조(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·관리)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제25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~ 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(생략)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·관리) ① -----

--, 제23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